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011. 6. 30
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6월 13일 정형기 의원 외 3인
- 나. 회부일자 : 2011년 6월 14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(2011년 6월 30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정형기 위원

가. 개정이유

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자치 조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장의 임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활동을 보장하고자 제출된 것임

나. 주요개정 내용

- (1) 안 제4조(통장의 임기)제1항에서 “ 다만, 신규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”라는 조항을 추가 삽입하여 통장의 공석에 따른 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
- (2) 안 제4조제2항에서 임기 중 통장의 연령이 65세에 도달한 경우 그 달의 말일까지 재임하도록 하여 임기만료일에 대하여 세부적

으로 정확하게 규정

- (3) 안 제4조제3항에서 통장이 임기 중 해촉되어 공석이 된 경우에는 신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보다 안정적인 임기를 보장
- (4) 안 부칙 제1항에서 제4조제2항의 규정은 혼선을 방지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11년에 생일의 도래여부에 관계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
- (5) 안 부칙 제2항에서 현재 재임 중인 통장도 개정된 제4조를 적용하게 하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기 중 해당 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당연 해촉 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통장관리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함.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

동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6항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의 최 일선인 동행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에 대한 임기는 물론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다 확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장관리 및 운영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대민봉사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안 제4조 제1항에서 “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”라는 조항이 특정 통장의 장기적 재임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차단장치를 마련하여 공정한 통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- 5. 토론요지 : 없음**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- 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**
- 8. 기타사항 : 없음**